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45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배우자 농지 상속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이개호의원안)	2

I. 개요

1.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4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13.
- (3) 회 부 일 : 2024.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배우자 농지 상속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이개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 감면조건 - 농지 소재지 <u>거주자가 8년 이상</u>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u><특례 신설></u> ○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액 100%	☐ 배우자 농지 상속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 ○ 감면조건 - 농지 소재지 <u>거주자가 8년 이상*</u>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u>* 배우자의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적용</u> ○ 감면세액 - 현행과 동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개호의원안 2024. 12. 13. 발의(의안번호 6457)

☐ 개정안은 배우자의 자경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자경기간 산출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업·농업인에 대한 보호¹⁾를 구현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자경을

1)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한 농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법인 등에 2026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자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2023년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현황을 살펴보면, 예정신고 기준으로 6만 5,691건에 대해 9,404억원의 양도소득세액이 면제되었고, 확정신고 기준으로 2,592건에 대해 279억원의 양도소득세액이 면제되었음.

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동 조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액은 1조 664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중 상위 17위에 해당함²⁾.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 9.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예정신고		확정신고	
	자산건수	세액	자산건수	세액
2019년	91,408	1,389,511	5,902	50,112
2020년	104,824	1,600,157	5,011	45,291
2021년	116,295	2,018,310	4,708	49,532
2022년	87,410	1,486,034	3,597	39,270
2023년	65,691	940,379	2,592	27,86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5-4-4 8년 이상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현황

- 한편,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자 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음³⁾.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기간 계산 시 사망한 배우자(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존중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자경기간 산출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배우자 사망 이전에 함께 농지를 경작했던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3)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9-66-12

현행 규정 하에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⁴⁾에 따르면 자경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춘·자경하거나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공동으로 경작한 기간은 누락되지 않고 총 자경기간에 합산됨.

둘째, 만약 개정안이 농지 상속 이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않거나 해당 농지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유한 이후에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최소 자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본 제도의 취지 및 기타 토지 소유자와의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3. (생략)

문 의 처
02)6788-5148